【문제-1】 (30점)

甲은 시중에 판매되는 안마기의 내구성과 안마효과가 문제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안마기(구성 A+B+C)를 발명하였다. 甲은 위 안마기에 대한 체험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체험행사를 녹화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넷 동영상 게시 사이트에 올려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험행사의 참가자들은 甲의 발명을 체험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사진으로 담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였다.

甲의 발명은 체험행사에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안마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때마침 영화로 인기를 끌게 된 영국의 유명 락그룹 퀸(Queen)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에서 나오는 음절인 "마마(ma-ma)"와 같다고 하여 그의 발명은 "마마"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甲의 "마마"가 인기를 끌자, 乙은 이를 모방하여 안마기(구성 A+B+C)를 생산·판매하였다.

그 후 甲은 위 안마기가 출원 전 인터넷에 게시되었던 점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공지예외를 주장하여 특허를 취득하였다. 甲이 특허를 취득하자 乙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고,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된 甲의 발명이 선행발명으로 존재하였으므로 甲의 특허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일뿐더러, 乙이 실시하는 안마기 발명은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이므로 甲의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위 사안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5점)

(2) 위 사안에서 乙의 실시행위에 선사용권 및 중용권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비교분석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위의 사실관계와 달리, 甲이 최초로 출원한 특허의 청구범위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에 대하여 국내우선권을 주장·출원하여 특허 T를 등록받았고, 甲의 선출원일 후 우선권주장출원일 전에 乙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는 발명이 특허 T의 권리범위 내인 경우, 乙의 법적지위를 설명하시오. (5점)

(4) 위의 사실관계와 달리, 甲이 안마기 발명(구성 A+B+C)에 특허를 취득한 후 乙은 자신의 발명 Z(구성 A+B+C)를 완성하였으나, 甲의 특허침해가 염려되어 위 발명 Z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장차 기술적으로 점차 보완·변경하여 개발하기로 한 발명 Y(구성 A+B+C+D)에 대해 사업화 전략을 구상하였다. 乙은 특허침해에 대한 문제 예방을 위해 甲을 상대로 i) 심판 1: 실시하지 않기로 한 발명 Z와 ii) 심판 2: 미래에 완성하여 실시하려는 발명 Y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이 때 乙이 청구한 각 심판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설명하시오. (10점)

【문제-2】 (20점)

甲(특허권자)과 乙(실시권자)은 'AMVP 모드에서 영상 부호화 방법'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에 대하여 실시계약(이하 '이 사건 실시계약' 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실시계약 중 乙이 甲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기초적 사실관계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2011. 8. 29. 특허출원(이하 '이 사건 선출원'이라 함)을 하였다.
- 2012. 1. 20. 이 사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제출원(PCT)을 하였다.
- 2012. 3. 12. 위의 국제출원(PCT)에 대하여 당시 특허법 제203조가 정한 서면을 제출하여 국내절차를 진행하였다.(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함)
- 2012. 3. 16. 위의 국제특허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이하 '분할출원 A'라 함) 하였다.
- 2014. 4. 25. 위의 분할출원 A를 기초로 분할출원(이하 '분할출원 B'라 함) 하여 특허를 받았다.
- 그런데 분할출원 B(이 사건 특허발명)는 물론 분할출원 A의 특허출원서에도 '우선권 주장의 취지 및 이 사건 선출원의 표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선출원보다 늦게 출원된 선행발명(2011. 11. 7. 출원)으로 인해 진보성이 부정되었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분할출원 B'가 이 사건 선출원의 우선권주장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위 사안에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모두 甲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甲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상고 기각). 한편 특허법원에서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자, 그 선고일 이후부터 乙은 甲에게 이 사건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를 때, 이 사건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乙에게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제-3】 (30점)

외국회사 甲(원고)은 '마찰이동 용접방법'에 관한 발명 A(이하 '이 사건 방법발명'이라 함)의 특허권자이다. 甲과 乙 사이에 이 사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장비인 '마찰교반 용접기'(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 함)를 제조·판매해도 좋다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丙(피고)은 乙로부터 乙이 제조한 이 사건 용접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甲은 丙을 상대로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용접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방법발명을 업으로 실시함으로써 甲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자신의 이 사건 용접기의 구매 및 사용행위에는 甲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丙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그 주장의 이론적 근거,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8점)

(2) 위 사안에서, 실시권자 乙은 특허권자 甲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용접기를 국내 제조 후 국외에서 최초 판매하였다. 그 후 제3자에 의해 이 사건 용접기가 국내에 수입된 경우 甲의 특허권의 효력이 수입된 이 사건 용접기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3) 위 사실관계와 달리, 특허권자 甲은 직접 이 사건 용접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甲과 최초 구입자 乙은 재판매 금지조건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이 그 조건에 반하여 丙에게 전매(재양도)한 경우 甲의 특허권의 효력이 丙의 이 사건 용접기의 구매 및 사용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4) 위 사실관계와 달리, 특허권자 甲(원고)은 소외 X와 이 사건 방법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에는 이 사건 방법발명의 실시장소를 제한하고 타인에게 재실시 허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丁은 소외 X로부터 이 사건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이 사건 용접기(이하 '이 사건 전용품'이라 함)의 제작을 의뢰받고 20여 대를 제작해 소외 X에게 납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丁은 이 사건 전용품을 검수·시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방법발명을 실시하였다. 甲이 丁을 상대로 간접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10점)

【문제-4】 (20점)

甲은 사업자등록증상 가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접이식 여행용 가방』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특허 제0012345호(첨부자료 1)의 특허권자 乙(첨부자료 2)로부터 『접이식 여행용 가방』이 청구항 1과 동일하여 침해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생산·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송달받고, 그 경고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리사 丙에게 무효심판청구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변리사 丙은 선행문헌의 검색에 의해 비교대상발명 1(첨부자료 3)에 비교대상발명 2(첨부자료 4)를 결합 또는 유기적 결합을 하는 경우, 위 특허권의 청구항 1이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으나, 아직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이유'의 일부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아래의 『심판청구서』 중 아직 작성하지 못한 다음 사항을 작성하시오.

(1) 청구의 취지 (3점)

(2) 청구의 이유 중에서 “5. 무효사유의 판단” (15점)

(3) 청구의 이유 중에서 “6. 결론” (2점)

심판청구서

【청구인】 甲

【대리인】 丙

【피청구인】 乙

【사건의 표시】

【심판의 종류】무효심판

【특허번호】특허 제0012345호

【청구의 취지】별지와 같음

【청구의 이유】별지와 같음

【증거방법】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2019. 07. 26.

청구인(대리인) 변리사 丙 (서명 또는 인)

【별지내역】

【청구의 취지】

(작성)

【청구의 이유】

1. 특허 제0012345호의 개요

특허 제0012345호(이하 “이건 특허”라 합니다.)는 갑 제1호증(등록특허공보) 및 갑 제2호증(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02. 01. 출원되었고, 2018. 10. 01. 특허등록되었습니다.

2. 이건 특허의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

이건 특허의 청구항 1(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합니다.)은 “본체부(10)와; 상기 본체부(10)의 측면에 회동부(22)로 결합되어 쇼핑백을 포함한 짐이 놓여지는 탑재부(20); 상기 본체부(10)에 설치되어 상기 탑재부(20)를 수납 상태로 고정하는 잠금부(40); 상기 탑재부(20)의 하부면에 형성된 두개의 바퀴(26);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여행용 캐리어”에 관한 것입니다.

3. 이해관계의 소명

심판청구인(甲)은 사업자등록증상 이건 특허의 제1항 발명과 같은 유형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특허권자 乙로부터 생산·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으므로 당해 특허권의 존부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무효증거

가. 비교대상발명 1(갑 제3호증)의 요지
본 발명은 물품을 수납하는 몸체(10)와, 상기 몸체(10)의 외면에 접철이 가능하도록 회동부(22)에 의해 결합되며 접힘 시 상기 몸체(10)의 외면에 맞닿고 펼침 시 상기 몸체(10)의 외면에서 외측으로 연장 형성되는 탑재부(20), 및 상기 몸체(10)에 형성되어 상기 탑재부(20)의 접힘 상태를 유지하는 잠금부(40)가 구비되어 있는 여행용 확장형 캐리어에 관한 것입니다.

나. 비교대상발명 2(갑 제4호증)의 요지
본 발명은 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적재부(20), 상기 적재부(20)의 모서리 하단 각각에 장착된 바퀴(50),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트의 상기 적재부(20) 방향으로 손잡이부(24)를 접을 수 있도록 구성된 회동부(23), 및 중심축(25)이 구비되어 있는 휴대용 접이식 카트에 관한 것입니다.

5. 무효사유의 판단

(작성)

6. 결론

(작성)

【증거방법】
[1] 갑 제1호증 : 특허 제0012345호의 등록특허공보
[2] 갑 제2호증 : 특허 제0012345호의 특허등록원부
[3] 갑 제3호증 : 비교대상발명 1(공개특허공보 10-2016-0000777호)
[4] 갑 제4호증 : 비교대상발명 2(공개특허공보 10-2016-0000888호)

첨부자료 목록

첨부자료 1 : 특허 제0012345호의 등록특허공보
첨부자료 2 : 특허 제0012345호의 특허등록원부
첨부자료 3 : 비교대상발명 1(공개특허공보 10-2016-0000777호)
첨부자료 4 : 비교대상발명 2(공개특허공보 10-2016-0000888호)

작성요령

1. 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모든 절차 및 양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것
3. 서술어는 경어를 사용할 것

1 특허 제0012345호의 등록특허공보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8년10월10일 (11) 등록번호 10-0012345 (24) 등록일자 2018년10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4N 7/173 (2011.01) G09G 5/00 (2006.01) (21) 출원번호 : 10-2017-0000123 (22) 출원일자 : 2017년02월01일 (65) 공개번호 : 10-2018-0000321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71) 특허권자 乙 (72) 발명자 ○○○ (73) 대리인 丙 (25) 심사청구일자 : 2017년02월01일 (43) 공개일자 : 2018년08월01일
(54) 발명의 명칭 : 접이식 여행용 캐리어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본체부(10)와; 상기 본체부(10)의 측면에 회동부(22)로 결합되어 쇼핑백을 포함한 짐이 놓여지는 탑재부(20); 상기 본체부(10)에 설치되어 상기 탑재부(20)를 수납상태로 고정하는 잠금부(40); 상기 탑재부(20)의 하부면에 형성된 두개의 바퀴(26);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여행용 캐리어

【청구항 2】

본체부(10)와; 상기 본체부(10)의 측면에 회동부(22)로 결합되어 쇼핑백을 포함한 짐이 놓여지는 탑재부(20); 상기 탑재부(20)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상기 탑재부(20)의 일단부에 회동결합부(32)에 의하여 결합되는 벽체부(30); 및 상기 본체부(10)에 설치되어 상기 탑재부(20)와 상기 벽체부(30)를 수납상태로 고정하는 잠금부(4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여행용 캐리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탑재부(20)의 하부면에 복수개의 바퀴(26)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여행용 캐리어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여행용 캐리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캐리어 본체의 측면에 접이식 짐칸을 더 구비하여 가방이나 쇼핑백과 같은 짐들을 올려두고 캐리어와 함께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한 접이식 여행용 캐리어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일반적으로, 여행용 캐리어는 여행에 필요한 각종 짐을 하나의 공간에 수납하는 데에 이용하는 가방의 하나로서, 여행용 캐리어의 손잡이를 인출하고 본체를 비스듬하게 눕혀 손잡이를 잡고 끌게 되면, 바퀴의 회전에 의해 상기 캐리어 내의 짐의 양이 많더라도 이동에 따른 불편함이 없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기 여행용 캐리어에 수납하는 내용물의 부피와 무게를 항공사의 규정한도에 맞추다보면, 상기 캐리어에 담지 못한 내용물들을 따로 보조가방에 챙겨서 운반하여야 하므로 상기 보조가방의 휴대가 불편한 문제점이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공개특허공보 10-2015-0003355호(공개일 : 2015년02월01일)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캐리어 본체의 측면에 접이식 짐칸을 더 구비하여 가방이나 쇼핑백과 같은 짐들을 올려두고 캐리어와 함께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한 접이식 여행용 캐리어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 실시예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의 측면에 회동부로 결합되어 쇼핑백을 포함한 짐이 놓여지는 탑재부, 상기 본체부에 설치되어 상기 탑재부를 수납상태로 고정하는 잠금부, 및 상기 탑재부의 하부면에 형성된 두개의 바퀴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실시예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의 측면에 회동부로 결합되어 쇼핑백을 포함한 짐이 놓여지는 탑재부, 상기 탑재부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상기 탑재부의 일단부에 회동결합부에 의하여 결합되는 벽체부, 및 상기 본체부에 설치되어 상기 탑재부와 상기 벽체부를 수납상태로 고정하는 잠금부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적어도 다음의 효과를 포함한다.

첫째, 상기 여행용 캐리어 내의 수납공간이 부족한 경우 상기 탑재부를 수평방향으로 펼쳐서 상기 쇼핑백을 포함한 짐을 올려놓고 운반함으로써 상기 짐의 운반 및 휴대에 따른 편리성이 향상된다.

둘째, 상기 탑재부의 하부면에 복수개의 바퀴를 구비함으로써, 상기 캐리어를 운반함에 있어 손목의 피로감을 줄임과 동시에 상기 캐리어의 동선을 부드럽게 제어할 수 있어 편리성이 향상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여행용 캐리어의 접힘상태를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여행용 캐리어의 펼침상태를 도시한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 및 실시예 2를 설명한다.

[실시예 1]

실시예 1에 따른 여행용 캐리어(1)는 본체부(10)와, 상기 본체부(10)의 측면에 회동부(22)로 결합되는 탑재부(20), 및 상기 본체부(10)에 형성되어 상기 탑재부(20)를 수납상태로 고정하는 잠금부(40)를 포함한다.

상기 본체부(10)는 상기 여행용 캐리어(1)의 전체하중을 지지함은 물론 외관을 이루는 것으로써, 상기 여행에 필요한 짐을 수용하는 수용함(16)과, 상기 수용함(16)의 측면에 형성되어 상기 탑재부(20)를 수용하는 오목홈(12), 및 상기 수용함(16)의 하부면에 구비된 복수개의 본체바퀴(14)를 포함한다.

상기 탑재부(20)는 상기 본체부(10)의 측면에 회동부(22)를 통해 결합되어 상기 수용함(16)에 수납되지 못한 여분의 짐이 놓여지고, 상기 오목홈(12)에 수용되어 회동부(22)를 따라 펼쳐지거나 접혀지는 탑재판(24)을 포함하고, 상기 탑재부(20)의 하부면에는 복수개의 바퀴(26)가 구비된다.

상기 잠금부(40)는 상기 수용함(16)의 측면에 형성되어 상기 오목홈(12)에 수용되는 상기 탑재부(20)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작용을 실시예 1을 참고로 설명한다.

상기 여행용 캐리어(1)의 상기 수용함(16)에 수납할 짐이 많아 보조가방이 필요한 경우, 상기 잠금부(40)의 걸림을 해제한 후 도 2에서와 같이 상기 탑재부(20)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지면에 위치시킨다.

이때 상기 탑재부(20)가 지면에 펼쳐지는 경우, 상기 본체부(10)의 본체바퀴(14)와 상기 탑재부(20)의 바퀴(26)가 동일선상에 위치하므로, 상기 본체부(10) 및 상기 탑재부(20)를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기 탑재부(20)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상기 탑재판(24)을 회동하여 상기 오목홈(12)에 맞댄 후, 상기 잠금부(40)를 잠금하여 상기 탑재판(24)을 고정하면, 상기 여행용 캐리어(1)의 부피가 최소화된다.

[실시예 2]

실시예 2에 따른 여행용 캐리어(1)는 본체부(10)와, 상기 본체부(10)의 측면에 회동부(22)로 결합되는 탑재부(20), 및 상기 탑재부(20)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상기 탑재부(20)의 일단부에 회동결합부(32)로 결합되는 벽체부(30), 상기 탑재부(20)에 짐을 올려놓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벽체부(30)를 상기 탑재부(20)와 수평으로 접어서 일체형으로 상기 본체부(10)에 수납상태로 고정하는 잠금부(40)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탑재부(20)의 하부면에는 복수개의 바퀴(26)가 구비된다.

상기 여행용 캐리어(1)의 상기 본체부(10)와, 상기 탑재부(20), 상기 바퀴(26) 및 상기 잠금부(40)는 실시예 1과 기술사상이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상기 벽체부(30)에 한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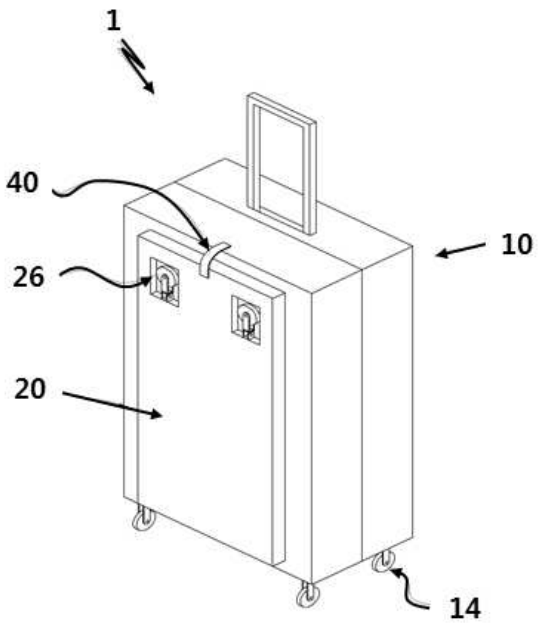
상기 벽체부(30)는 상기 탑재부(20)의 일단부에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회동결합부(32)를 따라 상기 탑재부(20)와 수직으로 펼쳐지거나 수평으로 접혀지는 것으로서, 상기 탑재판(24)에 놓여진 짐이 외부하중에 의해 주변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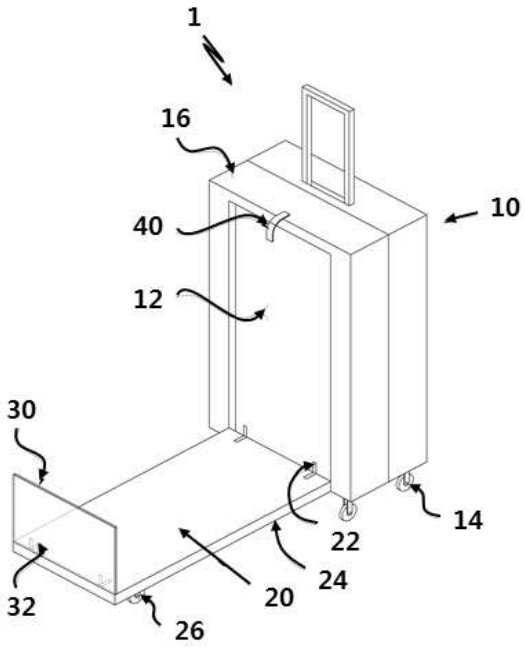
1 : 여행용 캐리어	10 : 본체부	12 : 오목홈
14 : 본체바퀴	16 : 수용함	20 : 탑재부
22 : 회동부	24 : 탑재판	26 : 바퀴
30 : 벽체부	32 : 회동결합부	40 : 잠금부

【도면】

【도 1】



【도 2】



2 특허 제0012345호의 특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특허번호	제 0012345 호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1번	출원연월일	2017년 02월 01일
	출원번호	2017-0000123
	공고연월일	2018년 10월 10일
	특허결정연월일	2018년 09월 10일
	청구범위의 항수	3
	분류기호	H04N 7/173 (2011.01) G09G 5/00 (2006.01)
	발명의 명칭	접이식 여행용 캐리어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7년 02월 01일
	2018년 10월 01일 등록	
특허료란		
제01-03년분 (2018. 10. 01.~2021. 10. 01.) 금액 250,000원 2018년 10월 01일 납입		
특허권자란		
	(최종권리자) 乙	
순위번호	등록사항	
1번	(등록권리자) 乙 2018년 10월 1일 등록	
이하여백		

3 비교대상발명 1(공개특허공보 10-2016-0000777호)

(19) 대한민국특허청(KR)	(11) 공개번호 10-2016-0000777
(12) 공개특허공보(A)	(43) 공개일자 2016년07월0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4N 7/173 (2011.01)	(71) 출원인 ○○○
(21) 출원번호 10-2015-0000333	(72) 발명자 ○○○
(22) 출원일자 2015년01월05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4) 대리인 ○○○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54) 발명의 명칭 : 여행용 확장형 캐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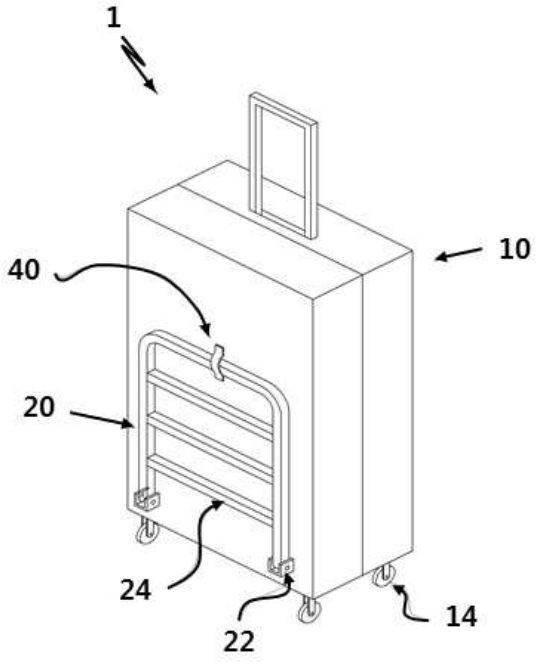
(57) 요약

캐리어의 몸체 측면에 추가적인 배낭이나 소형 가방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용 확장형 캐리어(1)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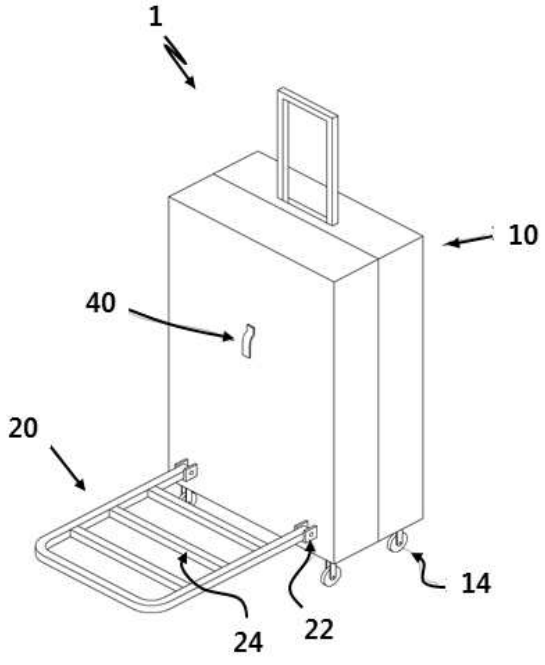
상기 여행용 확장형 캐리어(1)는 물품을 수납하는 몸체(10)와, 상기 몸체(10)의 외면에 접철이 가능하도록 회동부(22)에 의해 결합되며 접힘 시 상기 몸체(10)의 외면에 맞닿고 펼침 시 상기 몸체(10)의 외면에서 외측으로 연장 형성되는 탑재부(20), 및 상기 몸체(10)에 형성되어 상기 탑재부(20)의 접힘 상태를 유지하는 잠금부(40)로 구성된다.

【도면】

【도 1】



【도 2】



4 비교대상발명 2(공개특허공보 10-2016-0000888호)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6-0000888 (43) 공개일자 2016년08월0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9G 5/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5-0000222 (22) 출원일자 2015년02월05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71) 출원인 ○○○ (72) 발명자 ○○○ (74) 대리인 ○○○
(54) 발명의 명칭 : 휴대용 접이식 카트	

(57) 요약

본 발명은 간단한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접어 휴대하면서 필요 시 펼쳐서 각종 물품을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는 휴대용 접이식 카트를 제공한다.

상기 접이식 카트에는 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적재부(20), 상기 적재부(20)의 모서리 하단 각각에 장착된 바퀴(50),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트의 적재부(20) 방향으로 손잡이부(24)를 접을 수 있도록 구성된 회동부(23), 및 중심축(25)이 구비되어 있다.

【도면】

【도 1】

